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2나40056(본소), 2022나41691(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손해배상(자)]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2나40056(본소), 2022나41691(반소)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1가소383230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임윤정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스턴

담당변호사 곽성환

변론 종결2024. 9. 12.

판결 선고2024. 10. 17.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1가소383230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312,008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5.부터 2024.

10. 1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의 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9,661,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73,339,74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5.부터 2024. 9. 10.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21. 3. 4. 22:15경(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동일로 491 소재 면목교에서 장평교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고를 이 사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한편, 사고현장 약도는 별지와 같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경추의 탈구 및 골절, 우측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고의 병원치료비(가불금)로 19,661,220원(= 선급금 665,250원 + 치료비 18,995,9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에서부터 이 사건 차량 진행방향 쪽으로 무단횡단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비정형적인 사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인 C과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가불금으로 지급한 치료비 상당액인 19,661,22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가 가불금으로 지급한 돈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급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C이 전방주시 및 제한속도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가불금 반환의무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액인 373,339,7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피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왕복 7차선의 도로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 주행방향의 반대편 도로에서부터 이 사건 차량이 주행하던 도로까지 무단횡단을 한 점, 이 사건 차량 운전자에게 위와 같이 왕복 7차로의 대형 교차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3차로에 있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급히 몸을 4차로로 움직였고, 그 뒤 4차로에서 진행하던 이 사건 차량과 충돌한 점, 위 충돌 당시 횡단보도의 신호는 적색 신호였던 점, 나아가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작성의 교통사고분석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 운전자가 점프하듯 3차로에서 4차로로 진입한 피고를 인지하였던 시점에 이 사건 차량을 제동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무단횡단을 한 피고의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피고가 무단횡단한 거리와 이 사건 차량의 옆 차로인 3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은 피고를 확인한 후 정차한 점,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인데, C은 당시 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60km 정도로 과속주행하였다는 취지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차량 운전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일부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인정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은 15%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25,669,132원

1) 인정사실 가) 인적사항: D생 남성으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3. 4. 당시 54세 9개월 27일

나) 가동기간: 만 65세가 되기 전날인 2031. 5. 4.까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급기술자인 피고의 일일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가동연한을 만 70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고(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달리 피고의 가동연한을 위 경험칙과 달리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득 및 가동일수: E협회 발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통계소득, 가동일수 월 20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2021. 3. 5.부터 2022. 6. 4.까지는 사고 직전 3년간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에 재직하면서 얻은 월 평균소득에 기초한 4,144,886원, ② 2022. 6. 5.부터 2023. 3. 4.까지는 H 주식회사에서 얻은 월 소득에 기초한 5,225,000원, ③ 2023. 3. 5.부터 2025. 5. 4.까지는 주식회사 I 근정과의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월 소득에 기초한 5,000,666원, ④ 2025. 4. 10.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 J단체가 공표한 엔지니어링 업체 적용 2024년 임금기준표에 따른 7,145,213원이 피고의 월 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일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등 참조).1)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에 재직하였으므로, 피고의 일일수입 산정을 위한 월 소득은 G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2021년도 월 소득은 1,950,711원(= 2021년 기준 연 소득 23,408,533원/ 12개월)으로, 이는 2021년도 상반기 보통인부노임 2,821,910원(= 141,096원 × 20일)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피고의 월 소득은 보통인부노임을 기준으로 본다.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퇴원일인 2021. 3. 31.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00%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3. 4. K병원에 입원하여 응급처치를 받았고, 그다음 날 20:36경 L병원으로 전원한 사실, 피고가 2021. 3. 6.부터 2021. 3. 31.까지 26일간 M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신경외과(경추 2번 골절): 27%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I-A-1-a)

(3) 재활의학과(우측 고관절 관절운동 제한): 12%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고관절 II-1-a)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 관절강직 항목에는 관절운동범위 측정 방법에 관하여 "관절운동범위를 측정하는 경우 내고정물이 관절운동을 제한하는 때에는 내고정물을 제거한 후에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재활의학과 영역에 관한 감정의 N은 내고정물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절운동범위의 제한 정도를 측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노동능력상실률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참조), 갑 제16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육안으로 보더라도 내고정물은 피고의 고관절 부분 뼈 중앙에 삽입되어 있고, 그 길이와 두께가 상당한 점, 원고가 지적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의 경우 그 문언상 내고정물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위 감정의 N은 향후 치료의 내용과 치료비 등을 감정하면서 이 부분 내고정물의 제거 수술 및 제거비용을 산출하지는 않았으므로 위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달리 위 내고정물이 피고의 고관절 관절운동을 제한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감정의 N의 감정의견과 달리 내고정물을 제거한 상태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특별히 위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축하여 인정해야 할 만한 뚜렷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재활의학과(우측 슬관절 관절운동 제한): 10%,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슬관절 II-3)

(5) 성형외과(경부후면): 반영하지 않음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부후면 반흔 15cm 중 두피 내 반흔 3.5cm를 제외한 11.5cm는 외모의 노출부 반흔에 해당하여 성형외과 영역 추상장해 15%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421 판결,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향후 반흔 성형술 후에도 세션반흔이 영구적으로 남으나 성형외과적 노동능력상실률은 해당사항 없다고 평가된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반흔에 대한 향후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아 향후치료비 상당의 손해액을 인정하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추상 부위 및 앞서 본 피고의 성별, 나이, 현재 직업, 종사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생긴 추상이 피고의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에게 생긴 추상은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6) 복합장애율

① 퇴원일 다음 날인 2021. 4. 1.부터 2026. 3. 3.까지: 42.18%

② 2026. 3. 4.부터 가동종료일인 2031. 5. 4.까지: 35.76%

영구	신경외과 (경추골절)	27.00	0	27.00
재활의학과 (우측 고관절)	12.00	0	35.76	
한시	재활의학과 (우측 슬관절)	10.00	0.00	42.18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5, 14, 16호증, 을 제31호증의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O병원장, 국립중앙의료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M병원장, K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125,669,132원

2021-03-04	2021-03-31	141,096	20	2,821,920	100%	0	0	0	0	0	0	0
2021-04-01	2021-04-30	141,096	20	2,821,920	42.18%	1	0.9958	0	0	1	0.9958	1,185,286
2021-05-01	2021-08-31	144,481	20	2,889,620	42.18%	5	4.9384	1	0.9958	4	3.9426	4,805,405
2021-09-01	2022-04-30	148,510	20	2,970,200	42.18%	13	12.6344	5	4.9384	8	7.696	9,641,782
2022-05-01	2022-08-31	153,671	20	3,073,420	42.18%	17	16.3918	13	12.6344	4	3.7574	4,870,975
2022-09-01	2023-04-30	157,068	20	3,141,360	42.18%	25	23.7347	17	16.3918	8	7.3429	9,729,530
2023-05-01	2023-08-31	161,858	20	3,237,160	42.18%	29	27.3235	25	23.7347	4	3.5888	4,900,269
2023-09-01	2024-04-30	165,545	20	3,310,900	42.18%	37	34.3441	29	27.3235	8	7.0206	9,804,532
2024-05-01	2024-08-31	167,081	20	3,341,620	42.18%	41	37.7789	37	34.3441	4	3.4348	4,841,334
2024-09-01	2025-04-30	167,081	20	3,341,620	42.18%	49	44.5043	41	37.7789	8	6.7254	9,479,419
2025-05-01	2025-08-31	167,081	20	3,341,620	42.18%	53	47.7977	49	44.5043	4	3.2934	4,642,031
2025-09-01	2026-03-03	167,081	20	3,341,620	42.18%	60	53.4545	53	47.7977	7	5.6568	7,973,233
2026-03-04	2031-05-04	167,081	20	3,341,620	35.76%	122	98.4729	60	53.4545	62	45.0184	53,795,336
합계액(원)	125,669,132											

나. 기왕개호비: 인정하지 않음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되고(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간은 병원에서 제공되는 간호를 받을 뿐 별도로 가족 등에 의한 개호가 필요하지 않고, 가족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많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364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21. 3. 5.부터 입원 종료일인 2021. 3. 31.까지 27일간 1일 12시간씩(성인 1.5인)의 개호비 5,714,388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21. 3. 6.부터 2021. 3. 14.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기간의 개호비는 인정될 수 없고, 피고는 입원기간 동안 가족들로부터 24시간 개호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친자가 실제로 위 기간 피고를 개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기왕치료비: 803,541원

[인정근거] 이 법원의 M병원장, K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향후치료비: 20,015,520원

이 법원의 O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성형외과의 향후치료비가 12,620,000원인 사실, 재활의학과와 의향 치료비가 감정일인 2024. 4. 26.부터 2년 내지 5년 동안 4. 25.까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10,9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장래에 지출될 위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금을 산정한 후 이때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려면, 과잉배상을 피하기 위하여 위 각 치료비 상당금액에서 사고일로부터 향후 치료비가 필요한 날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옳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50287 판결,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330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각 향후치료비가 필요하게 된 일자를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4. 9. 13.로 보고(재활의학과와 의향 치료비에 관한 감정의견은 향후 2년 내지 5년의 치료 기간에 관한 것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법원 변론종결일은 감정일로부터 불과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그에 따라 잔존하는 치료기간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감정 의견대로 10,900,000원을 재활의학과와 의향 치료비로 인정하되, 계산의 편의상 재활의학과와 의향 치료비도 위 날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위 각 금액을 사고 발생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손해액에 해당하는 향후치료비의 액수는

다음 표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총 23,520,000원(= 12,620,000원 + 10,900,000원)의 향후치료비를 구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

성형외과 치료비	12,620,000	2024. 9. 13.	0.851	10,739,620
재활의학과 치료비	10,900,000	2024. 9. 13.	0.851	9,275,900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재활의학과 항목 치료비는 향후치료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활의학과와 향후치료비는 피고의 상태를 살펴본 O병원 재활의학과 소속 감정의 N이 피고에게 감정일인 2024. 4. 26.을 기준으로 추후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항목에 한하여 산정된 것이고, 그 산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가 기존에 치료비를 지출하지 않았다 하여 그 치료의 필요성이 소멸되거나 향후에도 이를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책임의 제한

- 1) 원고의 책임비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책임을 1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2) 계산: 21,973,228원 가) 적극적 손해 3,122,859원(= (기왕치료비 803,541원 + 향후치료비 20,015,520원) × 15%)
나) 소극적 손해: 18,850,369원(= 일실수입 125,669,132원 × 15%)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의 연령 및 과실의 정도, 피고의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15,000,000원으로 정한다.

5.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여부

- 1) 관련 규정 및 법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에 의하면, 자동차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보험회사등은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제3항),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항).

그리고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대하여 지급의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자동차보험 가불금 지급청구서'에는 지급받은 가불금이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은 반환한다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과실비율이 85%에 이르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가불금으로 지급한 치료비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비 상당의 가불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치료비 19,661,220원 상당을 가불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피고의 과실비율을 고려한 피고의 손해액은 합계 36,973,228원(= 재산상 손해 21,973,228원 + 위자료 15,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손해액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 19,661,220원을 상회함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결국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치료비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나.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6,973,228원(= 재산상 손해 21,973,228원 + 위자료 15,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치료비 19,661,220원 상당을 가불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위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17,312,008원(= 36,973,228원 - 19,661,220원)의 범위에서 잔존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7,312,008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불법행위일 다음 날인 2021. 3. 5.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와 원고의 본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추가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용범

판사김민순

판사이슬아

별지

1) 피고는 J단체가 공표한 엔지니어링 업체 적용 2024년 임금기준표를 기준으로 한 통계소득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임금기준표는 법원이 공인한 통계소득의 근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고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추후 통계소득만큼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